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3 - 34 - 131호 (사건번호 : 201307조사011)

안 건 명 SKT(주)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SK텔레콤(주) (대표이사 하성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의결연월일 2013. 9. 16.

주 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과 관련하여 협정과 다르게 도매
대가를 정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4단×15cm 또는 5단×12cm 이상의 크기로 2개이상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과 알뜰폰서비스 개념

- 도매제공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의거 음성, 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재판매하고자 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알뜰폰서비스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기존 이동전화사업자 보다 20~30% 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서비스 이다.

※ 알뜰폰서비스란 국민들이 통신비를 아끼면서 알뜰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동통신 재판매서비스'의 애칭('12. 6월 국민 명칭공모)

-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는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10. 3월 도입하고, '11. 7월부터 본격 시행하였으며
- 정부는 SKT, KT, LGU+ 등 3개사 중 시장점유율(50%이상)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SKT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10. 9월 지정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도매제공”)할 수 있다.
-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7호 제3조

- ①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란 SK텔레콤(주)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셀룰러, IMT2000, LTE의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별표 1]의 부가서비스를 말한다.

- 이통사와 협정체결을 통해 이동전화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별정통신)로는 (주)CJ헬로비전 등 28개사가 있으며
- 알뜰폰가입자 수는 '13. 8월 기준 204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414만명)의 3.77%를 차지하고 있다.

< 이동전화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현황 >

구분	SKT	KT	LGU+	계
사업자수	아이즈비전 등 9개사	CJ헬로비전 등 10개사	스페이스네트 등 9개사	28개사

- 알뜰폰사업자의 이동전화 재판매 형태는 대부분 홈쇼핑,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이며
- (주)CJ헬로비전, (주)SK텔링크 등 대형 알뜰폰사업자는 이통 3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 이동전화사업자는 알뜰폰사업자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매월 음성, 데이터 등의 사용량을 기초로 도매대가를 산정하고
- '도매대가 산정내역'과 '이용자별 세부 사용량 리스트' 등으로 도매대가를 익월 청구하면, 알뜰폰사업자는 사용량과 정산내역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구월의 익월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나. 피심인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일반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12년도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은 12조 2,990억원이며
- 이중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으로 인한 매출액은 35억원이다.

< 이동전화사업자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매출액 현황('12년) >

(단위 : 억원)

구 분	피심인	LGU+	KT	계
○ 이동전화 매출액	12조 2,990	4조 3,562	6조 7,750	23조 4,302
- 도매제공 매출액 (도매제공 매출비율)	35 (0.028%)	60 (0.14%)	314 (0.46%)	409 (0.18%)

※ 출처 : 이동전화사업자 제출자료

- 피심인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서 (주)SK텔링크 등 9개사와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동통신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 '13. 6월 기준 (주)SK텔링크 등 9개사의 가입자 수는 선불 534,545명, 후불 132,965명 등 총 667,510명이다.

< 피심인의 도매제공 알뜰폰사업자 및 가입자 현황 >

(단위 : 명)

알뜰폰사업자명	가입자수		
	선불	후불	계
(주)SK텔링크, (주)아이즈비전, (주)유니컴즈, (주)큰사람컴퓨터, (주)스마텔, (주)이마트, (주)한국케이بل텔레콤, (주)한국정보통신 (주)에스원	534,545	132,965	667,510

- 피심인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제 23조(도매제공 대가산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최근년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대가를 매년 산정하여야 하며
- 도매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고시 제5조 (이용약관의 공개)에 따라 이용약관을 두고 있다.
- 또한, 피심인과 알뜰폰사업자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 중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 피심인과 알뜰폰사업자간 주요 협정내용(이용약관 포함)

(1) 도매제공 서비스 관련

- 피심인이 알뜰폰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음성, 데이터, SMS와 Wi-Fi서비스, 번호변경 안내 및 착신전환 등으로 협정서 제2장(제6조~제8조)에 규정하고 있다.

(2)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및 정산

- 협정서 4장(제14조~제20조)에는 도매대가 산정 및 정산방법, 정산주기, 청구 및 지불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용약관 제36조에는 피심인이 청구한 금액의 이의제기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 후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협정 해지 관련

- 협정서 제22조(계약 해지 등)에는 알뜰폰사업자와의 협정 해지 사유에 대하여 이용약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세부 해지사유로는 '도매대가 2회이상 미납', 파산 등을 이용약관 제37조에 규정하고 있다.

* 피심인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이용약관 제37조의 해지사유

1. 이용대가의 지급이 연속해 2회 또는 통상 3회이상 연체되는 경우
2. 회생절차 개시, 파산신청 또는 당좌거래의 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3. 사전 동의없이 도매제공 받은 서비스나 설비를 제3자에게 재제공한 경우
4. 미합의 및 비정상적인 호를 소통시키고, 2회 이상 차단요구를 미시정한 경우
5. 이용약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미시정한 경우 등

(4) 협정기간 관련

- 협정서 제25조(협정기간 및 분쟁의 해결)에는 알뜰폰사업자와의 협정기간은 협정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협정의 갱신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협정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협정의 갱신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전기통신서비스 도매대가 관련

-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대가는 피심인과 알뜰폰사업자간 체결한 협정서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다.
- 피심인의 도매제공 대가 구조는 알뜰폰 후불가입자에 대해서만 기본료 2,000원을 받고, 국내 음성 및 데이터, SMS 등은 기본대가를 정하고 사용량 규모에 따라 추가 할인(1%~6%)하는 방식이며

※ 도매대가 정산시 기본료 2,000원 만큼 음성통화 등 사용량은 공제함

< 피심인-알뜰폰사업자간 도매제공 대가 >

구분	기본료	음성	데이터	SMS	추가 할인율(음성 기준)		
					2,250만분~	8,250만분~	17,250만분~
선불	-	54.51원/ 분	21.65원/ MB	8.87원/ 건	1%	3%	6%
후불	2,000원						

* 추가 할인율의 사용량은 선불과 후불 사용량을 총 합산

- 해외 로밍의 경우에는 알뜰폰사업자의 가입자가 실제 사용한 요금의 100%를 도매 대가로 적용하고 있다.
- 또한, 피심인은 알뜰폰사업자의 영업전산시스템 이용 및 청구, 수납 등을 대행 해주고 알뜰폰사업자에게 가입자 1인당 후불 800원, 선불 300원을 인프라 이용대가로 받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13. 4. 29~7. 31일 기간동안 피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12. 1월~'13. 6월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실태점검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 피심인이 알뜰폰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대가는 알뜰폰사업자와 협정된 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심인은 '13. 4월부터 SK텔링크 등 9개 알뜰폰사업자에게 협정 대가보다 높게 MMS(34원→42.03/건) 및 영상통화(125.88원→129.55원/분) 대가를 적용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알뜰폰사업자간 '13. 4월 이후 적용된 도매대가 현황 >

구분	협정대가(A)	'13.4월 이후 대가(B)	대가차이(B-A)	비고
음성	54.51	42.21	-12.3	△22.6%
데이터	21.65	11.15	-10.5	△48.5%
SMS	8.81	7.86	-0.95	△10.8%
MMS	34.0	42.03	8.03	23.6%
영상	125.88	129.55	3.67	2.9%

※ 피심인은 '도매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고시 제23조에 따라 매년 대가를 산정

- 또한, 피심인이 '13. 4월~5월 기간동안 MMS 및 영상통화에 대한 정산금액과 협정상의 도매대가를 적용한 정산금액을 비교해 보면,
- 동 기간동안 피심인이 정산한 금액은 총 2,305만원으로 협정 도매대가 (1,953만원) 보다 총 352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심인-알뜰폰사업자간 도매제공대가 정산내역 비교 >

(기간 : '13.4월~'13. 5월, 단위 : 만원)

구분	협정 도매대가(A)	실제 적용 도매대가 (B)	정산금액 차이(B-A)
금액	1,953	2,305	352

※ 피심인-알뜰폰사업자간 '13.4월~5월 기간동안 음성, 데이터, MMS, 영상통화 등에 대한 정산금액은 총 105,216만원으로 협정 도매대가(139,525만원) 보다 총 34,309만원이 적음

3. 위법성 판단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2호 - 나목에는 '상호협정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알뜰폰사업자와 체결된 협정과 다르게 MMS 및 영상통화 도매대가를 높게 적용하여 정산하는 등 도매제공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
- 비록 음성통화, 데이터, 영상통화 등 전체적으로 도매대가 정산 금액이 협정상 전체 도매대가 보다 적다 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를 협정과 다르게 높은 대가를 적용한 바 있다.
-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2호 -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이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나.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제공 관련하여 협정과 다르게 도매대가를 정산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4단×15cm 또는 5단×12cm 이상의 크기로 2개이상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의거,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 9. 16.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경 재



부위원장

김 충 식



위 원

홍 성 규



위 원

김 대 희



위 원

양 문 석

